

가족 개념: 장애인중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금지영역편제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안

여성팀 논의 결과

** 가족, 성 및 사생활을 여성팀 세미나 영역의 맥락을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 1). 가족 내에서의 차별금지
- 2). 모.부성권에서의 차별금지(양육권 포함)
- 3). 건강 및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
- 4). 폭력

그리고 “3장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신설하여 성별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인 규정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성 및 사생활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에서 처음에 논의했을 때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변호사님)

‘가족, 성 및 사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성은 gender의 의미가 아니라 sexuality의 의미에서의 성을 의미합니다. 즉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에 대한 정체성(남성으로서의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무성 또는 중성으로 인식하는 차별(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만드는 사례 등)에 대한 금지, 성을 누리고 즐길 권리에 대한 차별의 금지 등을 논하기 위해 분류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오해없기를 바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성을 누리고 즐길 권리는 남성장애인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회와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성을 누리고 즐길 권리는 한 성이 다른 성을 억압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위험이 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즐기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인정 혹은 유사한 방법의 수용을 통해 즐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생활”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사생활이 ‘없거나’ 혹은 ‘경시’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개인의 사적공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이 없으며,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장애인의 경우에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얼굴, 장애, 이름, 때로는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 등도 역시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한 예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사용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으며, 화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만들지 않거나 장애인용화장실에 직원용 출입구를 두어 누구나 손쉽게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이 바로 장애인에 대한 사생활의 침해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침해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묵인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에는 바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입니다.

3. “성” 및 “사생활” 영역의 법내 어디에 넣을 것인가 하는 편제 설정

따라서 이러한 ‘성’과 ‘사생활’은 “여성”쪽에만 넣기에도 적절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에서는 부득이 ‘성’, ‘사생활’ 및 ‘가족’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하나로 묶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이유 역시 차별금지법에서 범주가 너무 많으므로 가급적 범주의 개수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이 적절한 범주를 찾지 못한다면, 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하나의 범주를 두어야 할 것이며, 사생활은 실제로 법적,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와 유사한 범주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4. “폭력”설정 등 위의 여성팀 안에 대한 의견 *조영진*

폭력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만 부당하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폭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가해지는 억압, 폭력, 구타, 유기, 방치 등에 대한 금지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법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은 차별금지법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비교해서 장애인이 부당하게 당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해서는 안되는 일반적인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폭력은 바로 일반적인 반인권적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7시 30분에 여성팀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전까지 의견서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